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27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가단105699 부당이득금

원 고 1. A협동조합

2. B협동조합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욱

피 고 1. [redacted]도

[redacted]

[redacted]

2. [redacted]국

변 론 종 결 2018. 12. 14.

판 결 선 고 2019. 1. 11.

주 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redacted]도는, 원고 A협동조합(이하 '원고 A협'이라고만 한다)에 43,847,656원 및 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27

에 대한 2015. 7.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협동조합(이하 '원고 B협'이라고만 한다)에 78,400,98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redacted]도는, 원고 A협에 39,587,086원 및 이에 대한 2015. 7.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협에 74,145,37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redacted]국은 원고 A협에 4,260,57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협에 4,255,61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은 자신들이 납부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모두 피고 [redacted]도에 귀속됨을 전제로 주위적으로 피고 [redacted]도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농어촌특별세가 피고 [redacted]국에 귀속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피고 [redacted]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피고 [redacted]국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따라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부분에 관하여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27

피고 [redacted]도가 단일한 피고이고, 농어촌특별세 부분에 관하여만 피고 [redacted]도가 주위적 피고가 되고, 피고 [redacted]국이 예비적 피고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C마트 신축 및 운영

원고 A협(변경 전 명칭은 D협동조합이다)은 2012. 7. 12.경 [redacted]군 E에 3층 규모 건물을 신축하여 C마트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 B협은 2014. 10. 30.경 [redacted]군 F에 3층 규모 건물을 신축하여 C마트를 운영하고 있다(이하 위 각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취득세 비감면조치에 따른 원고들의 취득세 등 납부

[redacted]군은 세무조사 후 이 사건 부동산이 G협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고, 원고 A협은 2015. 7. 29., 원고 B협은 2015. 7. 28.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원고 A협				원고 B협		
구분	본세	신고가산	납부가산	합계	본세	신고가산	합계
취득세	45,205,130	9,041,020	14,443,030	68,689,180	55,811,350	14,929,530	70,740,880
농어촌특별세	3,228,930	0	1,031,640	4,260,570	3,986,520	269,090	4,255,610
지방교육세	2,583,150	258,310	825,310	3,666,770	3,189,220	215,270	3,404,490
합계				76,616,520			78,400,980

※ 원고 A협의 경우 납부한 취득세 중 C마트 전용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므로, 납부한 취득세 등보다 청구취지 금액이 더 적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27

다. 원고 A협에 대한 환급신청 거부

원고 A협은 2017. 8. 25. [redacted]군수에게 마트사업이 G협 고유목적 사업이고, 영리나 투기목적 업무 등 금지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납부한 취득세 등에 관하여 환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redacted]군은 2017. 9. 7. 원고 A협에 C마트 등 공산품매장은 G협 고유목적 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에서 정한 구제기간이 모두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라. 관계 법령과 원고들 정관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마트사업은 원고들 고유업무에 해당하고, 영리나 투기목적 업무 등 금지업무가 아니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취득세를 부과한 피고들의 처분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므로 부과처분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이 납부한 취득세 등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이 하는 C마트사업이 G협 고유업무이거나 영리업무가 아닌지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G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G협동조합법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G협에 대하여 설립취지에 반하는 영리업무를 금지하고 있는바, 원고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27

과 같은 지역G협이 운영하는 C마트 사업이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G협 고유업무라거나 영리업무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고, 그 운영현황 등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바, 먼저 기초사실과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는 있다.

가) G협동조합법과 원고들 정관에서는 원고들이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 · 제조 · 가공 · 공급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 A협이 운영하는 C마트 고객 중 조합원과 준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점유율 중 50% 내외이다.

다) 2015년 원고 B협이 운영하는 C마트 이용대상자 중 조합원과 준조합원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매출 중 41.80%(= 조합원 매출액 비율 22.21% + 준조합원 매출액비율 19.59%)이다.

라) 원고들 정관 제141조 제2항에 따르면, 1회계연도에 있어서 비조합원의 사업이용량은 각 사업별로 당해 회계연도 사업량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도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 · 제조 · 가공 · 공급 등의 사업(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대하여는 비조합원의 이용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 원고들 소속 조합원 내지 준조합원 매출액 비율이 50%에 미달하였다고 하여 정관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그러나 한편, 갑 제2호증의 2, 갑 제12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4, 8, 9, 10, 12, 을 제3호증의 5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살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운영하는 C마트사업이 G협 고유업무라거나 영리업무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27

가) 원고 A협 관련

① 원고 A협이 운영하는 C마트는 아래와 같이 총 면적 1,856.06㎡ 중 농산품 매장 또는 이를 위한 면적이 총 444.67㎡로 비농산품 매장(공산품매장, 음식점 등) 또는 이를 위한 면적 총 1,411.39㎡의 약 1/3 수준에 불과하다.

[원고 A협 C마트 농산품매장과 비농산품매장 면적]

구분	용도	면적(㎡)	농산품(㎡)	비농산품(㎡)
매장				
1층	소매점	778.2	393.39	384.81
2층	소매점	161.54	0	161.54
2층	일반음식점	702.29	0	702.29
합계		1,642.03	393.39	1,248.64
부대시설				
1층	주차장	72.0		
2층	일반음식점(연결통로)	32.48		
3층	기계실, 물탱크	109.55		
합계		214.03	51.28	162.75
최종 합계			444.67	1,411.39

※ 1층 소매점 중 농산품매장 393.39㎡

= 농산품매장 291.79㎡ + 공통면적 200.98㎡ 중 농산품매장 면적비율로 안분한 101.6㎡

1층 소매점 중 비농산품매장 384.81㎡

= 비농산품매장 285.43㎡ + 공통면적 200.98㎡ 중 비농산품매장 면적비율로 안분한 99.38㎡

부대시설도 농산품매장과 비농산품매장 각 면적비율로 안분함

② 2013년과 2014년 매출현황을 보면 공산품매장 매출액이 농산품매장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27

매출액보다 크고, 2014년 매출액 총 5,880,559,798원 중 조합원 이용실적은 1,788,258,710원에 불과하다.

[원고 A협 C마트 2013년, 2014년 각 매출액 현황]

구분	농산품매장	공산품매장	총 매출액
2013년	2,613,612,611원(46%)	3,017,086,663원(54%)	5,630,699,274원
2014년	2,743,656,100원(47%)	3,136,903,698원(53%)	5,880,559,798원

나) 원고 B협 관련

원고 B협이 운영하는 C마트는 총 면적 1,989.64㎡ 중 농산품 매장 또는 이를 위한 면적이 총 742.82㎡[1]로 비농산품 매장(공산품매장, 유료예식장 등) 또는 이를 위한 면적 총 1,246.82㎡의 1/2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설령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살핀 사정이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 · 명백하다고도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들의 주위적 · 예비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을 제3호증의 5 중 1층 농산물매장 469.49㎡ + 1층 농산물창고 10.65㎡ + 2층 농산물 창고 151.20㎡ + 1층 공통부분 중 농산품에 안분된 면적 75.07㎡ + 2층 공통부분 중 농산품에 안분된 면적 36.4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27

판사 서영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27

■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3637호, 2015. 12. 29,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최대 봉사의 원칙)

③ 조합과 중앙회는 설립취지에 반하여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7조(사업)

①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

다.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 원고들 정관

제5조(사업의 종류)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

나.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제141조(비조합원의 사업이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27

② 1회계연도에 있어서 비조합원의 사업이용량은 각 사업별로 당해 회계연도 사업량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농업인의 경우에 한한다)·나목·바목부터 차목까지, 제3호 다목부터 아목까지,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의 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그 이용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끝.